

<p>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px; margin-bottom: 10px;"> <tr><td style="padding: 2px;">의안</td><td style="padding: 2px;">391</td></tr> <tr><td style="padding: 2px;">번호</td><td style="padding: 2px;"></td></tr> </table> <p>발의년월일 : 1999년 9월 7일 발의자 : 신경식의원 외 13인</p> <p>1. 제안이유 화재진압 및 급수지원 등에 사용되는 소화전에 부과하는 수도사용료는 소방행정에 소극적 자세를 초래할 수 있고 수도사용의 직접 수혜자인 시민에게 부담을 시킬 수 없으므로 수도요금 부과를 면제하고자 함.</p> <p>2. 주요골자 가. 가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는 기준을 변경함.(안 제2조) ○ 현행 : 1톤 미만(1회 또는 연속되는 행위에 의한 경우는 1주일)</p> <p>○ 개정 : 5톤 미만(공사의 착공부터 완료시까지 총량 기준)</p> <p>나.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수집 또는 운반업의 영업구역을 서울특별시 지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폐지하고, 법령에서 그 근거규정이 삭제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을 허가함에 있어서의 법령상 허가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이외에 시조례로 추가로 중간집하장·굴삭기 등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도록 할 수 있던 제도를 폐지함.(안 제13조)</p> <p>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무적지도·감독 제도를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5조)</p> <p>라. 폐기물 무단 투기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 무단투기를 억제하도록 함.(안 제22조)</p> <p>3. 관계법령</p> <p>○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제1항 폐기물 관리법 제26조(폐기물처리업) 제3항·제6항 폐기물 관리법 제26조(폐기물처리업) 제3항·제6항</p> <p>○ 폐기물 관리법시행령 제10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 제1·2항</p> <p>4. 검토의견 (총괄부문) ○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련 법령이 지난 8월 9일 개정됨에 따라 관계규정을 개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세부사항)</p>	의안	391	번호		<p>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99.8.9)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p> <p>2. 주요골자</p> <p>가. 가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는 기준을 변경함.(안 제2조)</p> <p>○ 현행 : 1톤 미만(1회 또는 연속되는 행위에 의한 경우는 1주일)</p> <p>○ 개정 : 5톤 미만(공사의 착공부터 완료시까지 총량 기준)</p> <p>나.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수집 또는 운반업의 영업구역을 서울특별시 지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폐지하고, 법령에서 그 근거규정이 삭제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을 허가함에 있어서의 법령상 허가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이외에 시조례로 추가로 중간집하장·굴삭기 등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도록 할 수 있던 제도를 폐지함.(안 제13조)</p> <p>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무적지도·감독 제도를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5조)</p> <p>라. 폐기물 무단 투기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 무단투기를 억제하도록 함.(안 제22조)</p> <p>3. 관계법령</p> <p>○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제1항 폐기물 관리법 제26조(폐기물처리업) 제3항·제6항 폐기물 관리법 제26조(폐기물처리업) 제3항·제6항</p> <p>○ 폐기물 관리법시행령 제10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 제1·2항</p> <p>4. 검토의견 (총괄부문) ○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련 법령이 지난 8월 9일 개정됨에 따라 관계규정을 개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세부사항)</p>
의안	391				
번호					
<p>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화전과 급수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p> <p>1999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9년 10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p> <p>1. 제안이유</p>	<p>931</p>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폐지 또는 개정, 변경 등으로 현행 조례의 일부조항이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정 완화하는 등 시민편의를 위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되며,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소량 건설 폐기물의 범위를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1톤에서 5톤으로 확대하고, 폐기물업자에 대한 연 1회 이상 의무적 지도감독제도를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나 폐기물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 느슨하게 된 것은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성도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고시사항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무단투기률 균절시키기 위한 시민신고 정신 함양을 위하여 신고자에게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함.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999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이 1999년 10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등에 대한 보고 의무의 부여 및 관계공무원에 의한 조사·검수 권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6조)

3. 관계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명령 등)

②주무부관장관은 제조자 등이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조자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으며, 제조자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 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99. 2. 8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안 제6조 보고 및 검사 등의 규정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과 중복되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하려는 것으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위법에 중복된 규정은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나, 규제기능의 완화나 자체흡수로 인하여 행정적 관리가 증가되거나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더욱 청소행정 중 자원절약이나 재활용 촉진은 서울시의 인센티브 제공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업임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쓰레기 줄이기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서울시의 유도가 선행되어 일반시민이 참여토록 되어야 하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환경적 제재가 약화될 우려도 있음.